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임남수(Im Nam Soo)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책임연구원
borasac3@gmail.com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 의하여 인권교육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통하여 다양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적인 증가만큼 질적인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권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양적 증가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권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위한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 체험활동, 인권교육의 필요성, 광주광역시 인권

1.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의 개념

-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하며,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함
- 인권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정의내릴 수 있고,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내릴 수 있으며,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내릴 수 있음¹⁾
- 인권의 개념은 1789년 프랑스혁명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에서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제 권리를 엄숙히 선언(전문)”하면서, “인간은 권리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제1조)”, “인권보장과 권력분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제16조)”라고 천명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함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개념은 그 범위 및 내용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음
- 인권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전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인 권은 비로소 권리가 될 수 있음”(Hugh Starkey)에서 출발함²⁾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 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정의함
-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원칙과 인권의 역사성을 고려해 인권을 정의해보면, 인권에 관한 지식의 습득의 이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며, 이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기 위하여 필 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³⁾
-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05-2009)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인

1) 사단법인 한국입법학회, 2008. 12, 입법분야 인권교육 교재개발, 4.

2) 광주발전연구원, 2011. 6. 13,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안), 83.

3) 국가인권위원회, 2017. 3,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215.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인격과 인간존엄성을 완전히 발전시키고,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 전달로 정의함

필요성

-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인권에 대하여 배우는 자체가 권리에 속한다는 특성을 가짐⁴⁾
-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친화적 행동을 위한 기술습득, 인권친화적 행동유도이며, 인권교육의 3요소는 인권에 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임
-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 현장체험 및 활동 중심학습이 장려되고, 특히 사회적약자, 소수자는 인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이 필요함
-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군대, 교정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유엔과 국제사회는 ‘인권에 대해 배우는 자체가 권리이고, 인권에 대해 무지를 강요하는 것이나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교육인권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의 목적이 인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음.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맞추어야 한다.” 선언의 전문에서는 사람들이 인권을 이해해야만 인권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인권교육이 곧 인권의 길이라고 가르침. 즉, 교육 자체가 인권교육이 되어야 하고, 인권교육을 해야 인권이 보장됨
- 학교나 대학에서 인권교육이 증가하였고 학교 밖 교육도 활발해짐. 인권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지자체, 경찰, 복지기관, 기업 등에서 여러 형태로 인권교육을 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인권교육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 하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함께 인권침해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4) 이종태 외, 2005. 12, 인권교육 개념 방향 정립 모색 연구, 61.

표 1 | 인권교육 실시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합계	교육과정	방문 프로그램	인권특강	사이버교육	콘텐츠공동 활용교육
합계	회수	27,783	3,481	2,677	14,433	4,053	3,139
	인원	1,935,753	164,966	62,010	1,024,476	508,900	175,401
2018	회수	5,189	427	484	2,116	1,133	1,029
	인원	343,627	19,957	8,542	106,189	165,248	43,691
2017	회수	4,447	494	533	1,968	915	537
	인원	249,428	28,916	10,974	101,482	79,799	28,257
2016	회수	4,247	734	380	1,760	828	545
	인원	242,147	33,953	5,930	96,302	71,434	34,528
2015	회수	2,797	438	239	1,479	353	288
	인원	161,432	18,468	9,194	83,025	34,635	16,110

출처 : 2018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국가인권위원회. 2018. 239면

표 2 | 2019 광주인권사무소 상담 및 진정사건 처리 현황

2019. 11. 26. 현재

구분	진정				상담				안내/민원	
	면전	상담	기타	계	면전	방문/전화	우편/팩스	계	안내	민원
2019년	65	268	91	424	179	1,972	2	2,153	1,157	2
전체	2,425	5,268	112	7,805	4,023	24,487	9	28,519	34,037	992

출처 : 2019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9. 1면

표 3 | 광주인권사무소 기관유형별 진정접수 건수

2019. 11. 26. 현재

구분	구급시설	장애인 차별	경찰	다수인보호시설 (사회복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	기타
진정접수 건수	172	163	117	111	38	34	20	66
721 (100%)	(24%)	(23%)	(16%)	(15%)	(5%)	(5%)	(20%)	(9%)

출처 : 2019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2019. 1면

2. 광주광역시 인권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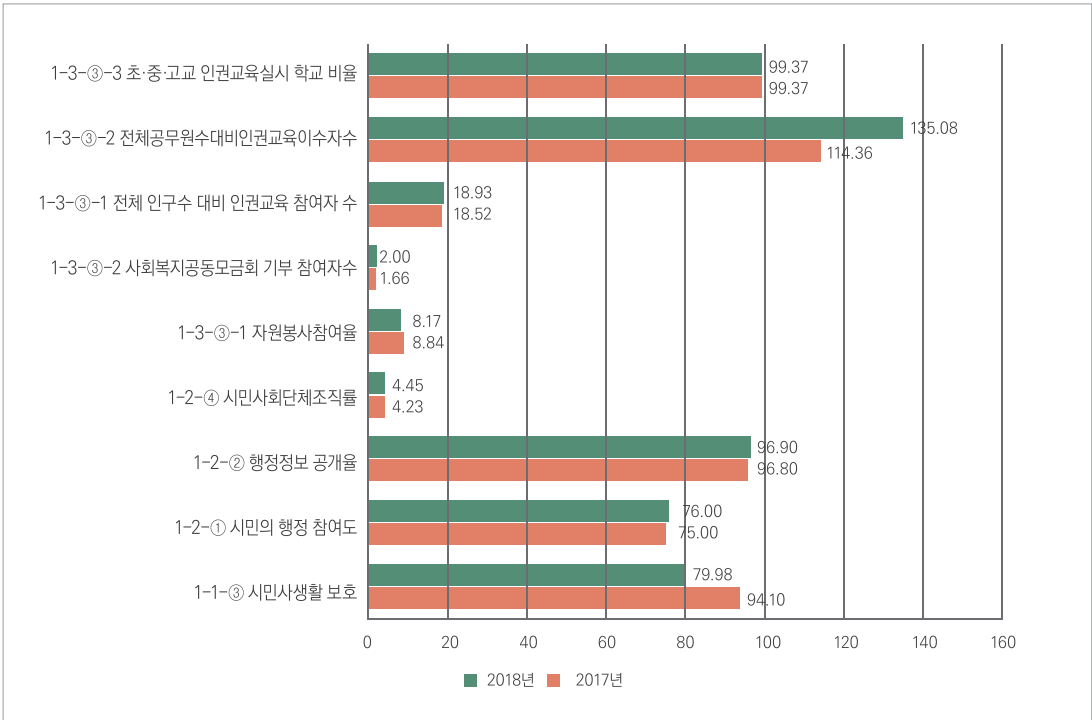
1) 2014~2015 광주광역시 인권백서

- 모든 시민이 인권을 배우고 향유하는 인권교육 도시 광주
 - 광주시는 인권도시의 출발점을 인권교육으로 보고, 모든 시민이 인권을 배우고 익혀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대의 지향점이자, 한편으로는 이것만은 지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인권교육 추진 원칙**
- 지역 내 인권교육 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인권교육 영역과 대상을 확장함
 - 인권교육 3요소 즉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을 위한 교육, 인권을 통한 교육 실현을 통한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행사하며,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인권친화적 시민 행동 유도
 -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의 장 확대, 교육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강좌 운영, 관심분야별로 인권교육 내용, 교육기법 등을 세분화하여 교육에 대한 접근도 및 효과성 극대화
- **2014년 인권교육 추진 결과**
-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도입되어 동주민센터, 자치구청,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등 장소와 규모와 상관없이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인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보다 전문화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권교육이 시도되는 등 인권교육 현장이 대폭 확대됨
 - 단계별 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강사의 역량 강화, 노인·유아 등 인권교육 영역의 대상의 세분화로 접근성 확대

2) 2018 인권지표 분석결과

- **인권교육 참여율**
- 시민 인권교육 참여율은 18.93%, 공무원 참여율은 123.21%, 중·고등학교 참여율은 99.37%인 가운데 인권교육 제도화로 인권감수성 함양과 인권문화 확산 성과로 전년대비 개선율은 3.32%임

표 4 | 인권교육 참여율



출처 : 인권교육 참여율, 광주광역시, 2018. 8면.

3) 2018~2021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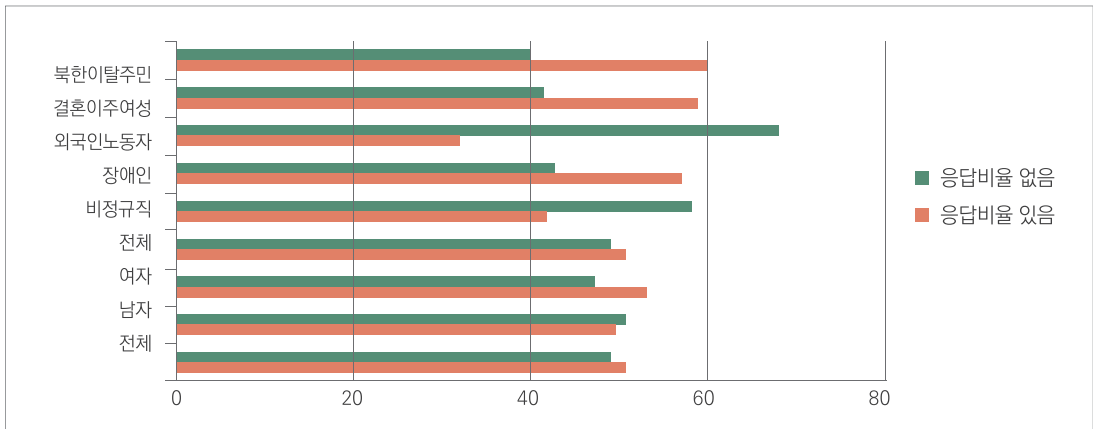
■ 인권교육

- 응답자 중 51%가 인권교육 경험이 있었으며 결혼이주여성·북한이탈주민의 인권교육률이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권교육률이 낮아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실질적인 인권증진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설계하여 실시해야 하며 인권침해나 차별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원스톱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핵심분야 중 하나인 ‘인권공동체 문화 형성’의 중점과제로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과 공무원·집단별 인권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
- 추진체제로써 인권교육 및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실행하기 위한 인권행정지원기구를 두도록 함

| 표 5 | 인권교육 경험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응답비율	
		있음	없음
전체	1201	51.0	49.0
성별	남자	49.3	50.7
	여자	52.5	47.5
일반시민	전체	50.8	49.2
	비정규직	41.8	58.2
초점진단	장애인	57.3	42.7
	외국인노동자	32.0	68.0
	결혼이주여성	59.0	41.0
	북한이탈주민	60.0	40.0



출처 : 인권교육. [2018~2021]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17. 9면.

■ 인권교육 확대 및 체계 개선

• 제1기 인권교육 평가 및 교육사업 재추진

-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비전과 전망, 단계별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열시 인권교육이 이루어짐
- 제2기 기본계획에 근거해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교육을 전담 지원할 전문기구의 설립이 요구됨
- 인권교육센터 설립,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권교육 강사의 지속적인 발굴과 훈련 지원
- 인권교육의 확대와 심화를 위하여 인권교육 참여 단체나 기관들이 인권교육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해 상호 지원 근거를 마련함

- 5·18, 민주주의, 평화, 다양성, 인문학 등 다양한 인문가치와 연계해 인권교육의 지평을 넓히고, 시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인권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의 제도화
- 공무원교육의 내실화
 - 공무원들이 자신의 행정 업무에서 인권과 관련된 업무 판단 능력 향상과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인권교육 실시
 - 인권담당 공무원, 일반 공무원 등 직무의 성격에 따라 인권교육의 수준과 내용을 다양화하고, 교육 내용을 혁신함으로써 인권교육이 행정의 인권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
 - 공무원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제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와 실무를 습득하도록 추진
- 계층별·집단별 인권교육 활성화
 - 인권 주체인 시민들이 스스로 인권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
 - 초·중·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대학교에 대한 인권교육 필요
 -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 등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가 필요
 - 어린이·청소년들이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어린이·청소년 중에서도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사교육현장에 대한 인권교육의 확대
 - 인권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 인권침해가 우려되거나 인권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확대
- 인권행정 지원기구 설립
 - 인권평화협력관실(현재, 민주인권평화국으로 확대됨)은 조직의 규모나 인적 구성 등의 면에서 정책연구 및 개발, 인권교육 등의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
 - 인권평화협력관실은 행정조직에서 인권행정을 견인하고, 인권정책의 추진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시행하며, 인권행정지원기구(인권센터 또는 재단)는 인권정책 개발,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업무 수행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지원기구 설립 전 인권교육과 같이 지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권지원기구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4) 지방자치단체 인권교육 현황(법무부 2015)⁵⁾

■ 서울특별시

- 인권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은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 진행함. 교육대상은 인권분야 활동 또는 인권관련 교육·연구 분야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이며, 집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 양성과정 수료 후 인권교육강사로 활동함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기본과정)의 교육대상은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시설종사자 및 시민으로 집합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 전체 교육시간의 85% 이상 참가 시 기본교육 수료가능하며, 기본과정 수료 후 심화과정으로 연계되고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강사로서 활동함
- 서대문구 주민인권학교는 서대문구 인권정책의 모니터링 활동 및 인권정책 제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을 위하여 운영함. 성동구청 전직원 '갈등관리·인권교육'은 직원대상 인권교육으로 효율적인 민원대응을 위한 교육으로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함. 성동구청 청소년 또래 노동인권상담사 양성 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인권법, 상당 기술 등에 대해 훈련 내용을 이수하고, 수료 이후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들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임. 강동구 소방안전-인권교육은 노인복지시설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임. 양천구 장애인 인권 직원교육은 장애인권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장애체험을 통한 교육임.

■ 경기도 수원시

- 공직자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은 수원시 본청 대상 인권교육으로 본청, 의회사무국, 전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짐. 수원시 구·동 공직자 인권교육은 순회교육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함.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21개 기관(사업소, 시 산하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이루어짐. 시민 인권교육은 일반시민,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공소사업에 의해 선정된 민간 인권단체에 의해 수행됨. 수원시 팔달구 공직자 대상 인권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됨

■ 경기도 안산시

-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집합교육으로 종사자들이 평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 및 대처요령 등에 중점 교육함

5) 2015년 자료로 현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반 교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들어주세요, 생각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교사 대상 ‘아동 인권 존중 상호작용 교육’을 실시함
- 남동구 간부공무원 청렴·인권 교육을 집합교육의 형태로 진행함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를 위한 인권교육은 교육수료 시 연간 이수 최소기준 충족 및 수료증을 발급함. 서구청 직원들 인권감수성 교육은 공직자 인권감수성 증진교육으로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됨. 광산구는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 학습하고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을 통해서 지역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인권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함.

3.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인권교육은 모든 국민의 자기 존중감 향상과 함께, 인권의 사각지대인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함.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6)’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인권교육을 받은 국민들은 12.8%에 불과함. 또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7.5%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은 51.6%에 이르고 있어 향후 인권교육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17)
-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효과적 예방적인 차원에서 필요함. 또한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에 대한 일상적 교육도 필요함
- 인권교육은 학교 인권교육, 공공 인권교육, 시민 인권교육의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타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 인권교육 특히 사회적 약자 집단, 일반 시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권교육은 모든 분야에서 양적·질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지자체,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하여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이는 양적 성장에 맞춰진 정책 내지 제도에 의한 것이라 보고, 또 다양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에 의한 교육의 형해화로 인한 질적 성장의 장애요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함

- 광주광역시 2019년 8월에서 12월까지 인권교육 계획에 따르면(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포털, <http://www.gjhr.go.kr/bb/board.php?subKey=0205000000&boardID=humanEducation>), 광주광역시 주관의 수요인권강좌 10회,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주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6회, 광주인권지기활짝 주관의 사고뭉치(동아리) 5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관의 강사 보수교육 1회, 광주트라우마센터 주관의 치유의 인문학 3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관의 인권특강, 의무교육, 인권감수성향상 등 7회,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주관의 다문화인권교육 5회,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주관의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서로배우기 4회, 문산마을공동체 주관의 인권사랑방 2회, 빛고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관의 빛고을 장애인자립생활대학(권익옹호) 1회, 일곡마을 주관의 놀이와 인권이 만나면 3회, 전남대여성연구소 및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주관의 북콘서트<어쩌면 이상한 몸> 1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관의 시민 인권강좌 12회(4회 공지되었으나 실제 12회 운영함), 풍두레 주관의 인권동아리 인권강좌가 2회 진행됨.(총 62회의 강좌가 실시됨)

■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제2기 광주광역시 인권증진 및 인권도시 기본계획(2018~2021)에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설계와 실시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를 위한 원스톱시스템 구축, 인권협력체계 구축과 인권행정지원기구 설치를 주장하고, 나열식 인권교육에 대한 문제점, 인권교육 강사의 지속적인 발굴과 훈련 지원, 인권교육 협력을 위한 MOU 체결과 상호 지원, 공무원교육의 내실화, 계층별·집단별 인권교육 활성화에 집중하고 특히 노인 등 특정집단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를 주장함.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정
 - 인권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는 필리핀의 경우처럼 헌법에서 인권교육을 명시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수차례 입법 발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광역지자체의 경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을 위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신설하여야 함
 - 광주광역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인권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교육 실시,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권고 및 지원,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함
- 인권교육 중 인권 (체험)활동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 인권은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성과(참여율)에 집착하여

강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때문에 인권교육이 양적 측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 하였지만 그 효과 내지 실질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음

- 미국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행동주의 임. 단순한 지식의 강의 및 전달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인권의식의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음.(법무부 2015) 미네소타 대학 인권센터는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인권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대상자들이 인권관련 단체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함. 이를 기반으로 '북부 중서부 협력 프로그램(Upper Midwest Fellowship Program)을 진행함.
- 이를 모형으로 하는 다양한 인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함.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강연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함. 하지만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과 함께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음. 「인권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권교육과 인권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